



ក្រសួងពាណិជ្ជកម្ម
Ministry of Commerce

ច្បាប់
ស្តីពី

វិធានដើមកំណើតទំនិញ

LAW
ON
RULES OF ORIGIN



왕령 (Royal Kram)

NS/RKM/0723/011

나,

**쁘레아까로나 쁘레아발 썸다윗 쁘레아 보롬모니을 노로덤 시하모니
싸만나폼 짜을싸쓰나 락카티야 케마라로알리어 쁘티뜨리을 토암마리어모사크쌀
케마리웃뜨니어 썸보하오피어 ګమ్뿌아엑가리웃로알보라낙썸뎀
쏘페악몽꼴리어 세레워볼리어 카엠리어썸이빠리어 쁘레아짜으그롱ګమ్뿌찌어텡빠다이**

- 캄보디아 왕국 헌법
- 캄보디아왕국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 시행령 NS/RKT/0918/925호, 2018년 9월 6일자,
- 캄보디아왕국 정부 구성원 임명 및 변경에 관한 왕실 시행령 NS/RKT/0320/421호, 2020년 3월 30일자,
- 각료회의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령 공포에 관한 로얄 크람 NS/RKM/0618/012호, 2018년 6월 28일자,
- 상무부 설립법 공포에 관한 로얄 크람 NS/RKM/0196/16호, 1996년 1월 24일자,
- 훈센 총리의 제안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률은 2023년 6월 12일 6기 입법부 9차 회기에서 국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23년 6월 21일 4기 상원 제10차 회기에서 형식과 합법성에 대해 완전히 검토 및 승인되었다.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규정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원칙과 규정을 규정하며, 무역 특혜와 비특혜 규정 시행을 통해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며 상품 원산지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범위)

이 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 범위를 정하며 다음 사항들에 적용한다.

- 1-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 2-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기관,
- 3-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신청 접수기관, 그리고
- 4- 원산지 신고를 하는 법인 또는 무역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산지 규정**이란 특혜 원산지 및 비특혜 원산지 규칙을 포함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 2- **원산지 특혜 규정**이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기타 특혜 무역 협정 따른 둘 이상의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 하의 상품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 3-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원산지, 수량 제한, 정부 조달 및 무역 통계 조건에서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호 조치, 표장을 적용할 목적으로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 4- **원산지 증명 신청접수 기관**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접수할 권한이 있는 관세청을 말한다.
- 5-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은 상무부의 무역 지원국 또는 수출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수출자를 규제하도록 상무부에서 승인 받은 기관을 말한다.
- 6- 원산지 증명서는 발행 기관이 발행하고 증명서와 관련된 상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특정 양식을 말한다.

- 7- **원산지 신고**는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나 일방적인 선호에 따라 국내법 및 규정,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무역 협정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진술서를 말한다.
- 8-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나 일방적인 선호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이나 기타 무역 협정에 따른 또는 일방적 특혜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
- 9-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비특혜 대우 목적의 적용을 위해 사용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
- 10- **최혜국대우**는 거래 파트너 간의 차별 금지 원칙을 말한다.
- 11- **원산지 증명**이란 해당 상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증거 역할을 하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의 문서 또는 명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신고서가 포함한다.
- 12- **중간 국가**는 원산지 국가와 마지막 수입 국가가 아닌 상품이 운송된 국가를 의미한다.

제2장

특혜 원산지 규정

제4조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

자유 무역 협정 및 기타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목적을 위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인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다.

제5조 (일방적 특혜에 따른 원산지 특혜 규정)

일방적인 특혜 관세 처리 목적을 위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특혜 부여 국가 수입국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다.

제3장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제6조 (상품의 원산지 결정)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한다.

-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한 상품, 또는
- 실질적인 가공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가) 해당 국가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추출된 석유 등 광물 상품
- 나) 해당 국가에서 수확되거나 보관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다)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
- 라) 해당 국가의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상품,
- 마) 해당 국가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통해 얻은 상품,
- 바) 해상 어로로 얻은 제품 및 해당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바다에서 채취한 기타 상품,
- 사) 위의 라항에 해당하는 종류의 제품으로만 해당 국가의 공장 선박에서 획득한 상품,
 - 아) 해당 국가의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또는 해저에서 추출된 상품(단, 해당 국가가 해당 토양 또는 해서를 채굴할 단독 권리가 있는 경우)
- 자) 제조 및 가공 작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폐기물, 해당 국가에서 수집되고 원자재 회수에만 적합한 중고 상품
- 차) 위의 가항부터 자항까지 언급된 상품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

여러 국가가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실질적인 가공 기준에 따라 한다. 실질적인 가공 기준을 사용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품목 분류 가공 기준 또는 증가 비율 기준에 따라 한다.

실질적인 가공 기준의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은 경제재정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간의 부처 간 프라카스(Prakas)에 의해 결정된다.

제7조 (최소한의 운영 및 프로세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되는 다음 작업은 해당 상품에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1- 운송 또는 보관 중 상품 보존에 필요한 작업
- 2- 대량 분리, 포장 그룹화, 분류 및 등급 매기기, 재포장 등 상품의 포장이나 시장성 있는 품질을 개선하거나 선적 준비를 위한 작업
- 3- 간단한 조립 작업;
- 4- 최종 제품의 혼합된 제품의 특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원산지가 다른 상품의 혼합.
- 5- 관련 자유 무역 협정, 기타 무역 협정, 또는 국제기구에서 결정한 운영 및 프로세스.

제8조 (직접 위탁)

원산지 상품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법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된다.

- 1- 수출 국가에서 수입 국가로 직접 운송된 상품
- 2- 상품이 중간 국가를 통해 운송되었으나 상품이 하역, 저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작업과 같은 물류 활동을 제외하고는 중간 국가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상품.

제4장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표시

제9조 (원산지 증명)

종이 및 전자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명세서는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특혜 원산지 증명은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인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일방적 특혜에 따른 특혜 원산지 증명은 수입 특혜 부여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무부 장관이 정한 수출 상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최소 정보 요건과 형식을 갖는다.

제10조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요건 및 절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수입 특혜 부여 국가의 원산지 규정 또는 다음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경제재정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간의 부처 간 프라카스(Prakas)에 의해 결정되며, 캄보디아 왕국은 당사국이며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준수한다.

제11조 (원산지 증명서 원본)

종이 형식의 정통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실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에는 발급 기관의 공식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며, 또는 발급 기관이나 수출국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 기타 인증 방식이 있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 기관이나 수출국의 기타 관할 기관에 의해 전자적으로 발행된 경우, 진위 여부는 당사자, 일방적 선호 또는 기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캄보디아와 수입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 및 기타 무역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 원산지 증명서 인증 절차는 상무부 장관의 공고문으로 정한다.

제 12조 (기록 보관 요건)

생산자와 수출자는 상무부의 관할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를 위해 3년 동안 캄보디아 왕국에 위치한 각 사업장에서 원산지 증명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관세청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를 위해 관세법에 따른 캄보디아 왕국에 위치한 각 사업장에 원산지 증명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본 조의 1항과 2항에 언급된 기록은 기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자 또는 서면 형식을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 가능하다.

제13조 (상품 원산지 사기)

누구든지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얻거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물품의 원산지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상품 원산지 사기 행위는 금지된다.

- 1- 원산지 증명 사기 또는
- 2- 원산지 증명에 포함된 정보의 사기.

제14조 (상품 원산지 증명 신청의 부적합)

누구든지 상품원산지 증명 신청에 있어서 고의로 부적합한 행위를 하서는 아니 된다.
상품원산지 증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부적합 행위를 금지한다.

- 1-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 상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3- 수입 원자재 송장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 4- 수출품 송장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 5- 상품의 허위 분류
- 6- 원산지 기준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 7- 생산 보고서의 허위 제공
- 8-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 허위 제공
- 9- 지출 정보의 허위 제공

제15조 (원산지 증명 면제)

특혜 원산지 증명의 면제는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인 자유 무역 협정이나 기타 무역 협정의 조항 또는 일방적 선호 조항에 따라 한다.

비특혜 원산지 증명은 다음과 같이 면제된다.

- 1- 수출상품 수입국에서 요구하거나 수출자가 요청한 상품의 경우.
- 2- 수입상품, 무역 조치를 적용하거나 캄보디아 왕국의 공공 복지 및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

제5장 관할 당국 제1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제16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상무부의 무역지원국 또는 상무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이 종이 및 전자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 된다. 상무부는 상품 원산지를 자체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인증 수출자 자격을 규제하고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는 상무부 장관의 공고문으로 정한다.

제17조 (발급 기관의 기록 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국은 기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본 조항의 1항에 언급된 기록은 기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자 또는 서면 형식을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 가능하다.

제18조 (검증)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간주되거나 수입국 발급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심되는 상품의 원산지, 일부의 정보 등 수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를 소급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다.

상무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자는 소급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무부에 상품 원산지 관련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2부**원산지 증명 접수 기관****제19조(원산지 증명 접수 기관)**

관세청은 수입업자, 생산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시한 특혜 및 비특혜 관세 대우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접수하는 기관이다. 수입품의 원산지 증명서 접수절차는 관세법 및 기존 규정을 준수한다.

제20조 (검증)

관세청은 수입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문서의 진위 여부 또는 상품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소급 점검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관세청은 기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

소급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원산지 또는 수출국의 발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관할 공무원 및 조사 절차

제21조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상무부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는 수입국으로부터 특혜관세대우 또는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해 또는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만 진행한다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생산 과정, 문서, 회계 문서, 기록 및 기타 정보를 검사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 조사 절차는 상무부장관의 공고문으로 정한다.

제22조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관)

본 법에 규정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이 무역지원국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제23조 (자격 부여 절차)

사법경찰로서의 자격이 있는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

수출품 원산지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 자격부여 절차는 법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간의 부처 간 프라카스(Prakas)에 의해 결정된다.

제24조 (조사관의 권한)

법에 따라 사법경찰 자격을 갖는 수사관은 형법에 따른 규정에 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조사, 수사, 소환, 증언 접수, 수색, 증거 압수, 자료 수집 등의 권리를 갖는다.

조사관은 본 법에 규정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각급 지방 당국과 군인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증인의 증언)

수사관은 증인의 증언이 형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받을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그 거부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은 검사에게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특혜관세대우 또는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해 또는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 원산지 사기에 연루된 경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사법경찰 자격을 받은 조사관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공동 원산지 조사)

상무부 또는 관세청은 필요한 경우 공동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처벌

제28조 (제재)

이 법에 따른 제재에는 행정 제재와 형사 제재가 있다.

행정적 제재에는 다음과 같다

- 서면 경고
- 사업 활동 및 운영의 일시적인 중단 및 중단
- 허가 및 면허의 정지, 취소 또는 회수.

서면 경고, 사업 활동 및 운영의 정지 및 중단, 허가 및 면허의 정지, 취소 또는 회수는 상무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상무부의 프라카스(Prakas)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무부장관은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 장관의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정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캄보디아 왕국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행정제재의 종류와 권한,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관세법 및 기존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벌에는 다음과 같다

- 과도기적 처벌
- 벌금
- 투옥

본 법에 따른 기타 과도기적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과도기적 처벌의 부과는 사법경찰 자격을 갖춘 수사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권한으로 한다.

과도기적 처벌금을 지불하면 관련 범죄 행위가 소멸된다.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본 법에 따른 부과된 행정 조치 및 기타 행정 제재가 완료되거나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위반자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자격이 있는 수사관 또는 세관공무원이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수출 상품의 원산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임시 처벌 부과 절차는 상무부 장관과 법무부장관 간 프라카스(Prakas)에 의해 정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부과 절차는 관세법 및 기존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본 법에 규정된 과도징금납부, 경과징수금영수증 관리, 수출 상품의 원산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은 경제재정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간의 프라카(Prakas)에 의해 정한다.

제29조 (기록 보관 요건 위반)

본 법 제12조 1항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는 서면으로 경고된다. 서면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1,000,000(일백만) 리엘에서 10,000,000(일천만) 리엘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제30조 (원산지 증명 신청 시 부적합 행위를 범하는 행위)

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함에 있어 부적합 행위를 범한 자는 서면으로 경고된다.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도 원산지 증명 신청에 있어서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 일시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 신청에 있어서 계속

부적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000(일백만) 리엘 ~ 20,000,000(이천만)리엘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배의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산 지증명서 신청에 있어서 부적합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1(일)년 이상 3(삼)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1,000,000(백만)리엘에서 20,000,000(이천만)리엘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31조 (원산지 사기 행위)

본 법 제13조에 위반하는 자는 1(일)년 이상 5(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천만)리엘 ~ 40,000,000(4천만)리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은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 형법 제42조(법인의 형사책임)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본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법인은 2,000,000(이백만)리엘에서 40,000,000(사천만)리엘 이하의 벌금과 함께 제168조(법인에 적용되는 추가처벌)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 (기타 형법의 적용)

본 법 제7장 규정의 적용은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가 다른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간주될 경우, 다른 형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다.

제8장 경과 조항

제34조: (원산지 증명서 유효성)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9장
최종 규정

제35조 (폐지)

이 법에 위배되는 모든 조항은 폐지된다.

왕국, 2023년 7월 5일

[서명]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께 제출

총리

[서명]

훈센 총리

훈센 총리에게 제출

상무부 장관

(서명)

뵘 쏘라삭 장관

